

[양식 제11호]

[様式第11号]

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 離婚(親権者指定)届											
		남 편(부) 夫		아 내(처) 妻							
		* (성) / (명) *(氏) / (名)		* (성) / (명) *(氏) / (名)							
		(성) / (명) (氏) / (名)		(인) 또는 서명 (印)又は署名		(성) / (명) (氏) / (名)		(인) 또는 서명 (印)又は署名			
		본(한자) 本貫(漢字)		전화 電話		본(한자) 本貫(漢字)		전화 電話			
①이혼 당사자 (신고인) ①離婚 当事者 (届出人)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		-		-				
	출생연월일 生年月日										
	*등록기준지 *登録基準地										
	*주소 *住所										
	부(양부)성명 父(養父)氏名										
②부모 (양부모) ②父母 (養父母)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		-		-				
	모(양모)성명 母(養母)氏名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		-		-			
③기타사항 ③その他の事項											
④재판확정일자 ()		년 월 일 年 月 日		법원명 法院名		법원 法院					
		년 월 일 年 月 日		법원명 法院名		법원 法院					
아래 친권자란은 협의이혼 시에는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후에 기재합니다. 下記の親権者欄は協議離婚の場合は法院による協議離婚意思確認の後に記載します。											
⑤친 권자 지정 ⑤親 権者 指定	미성년인 자의 성명 未成年の子の氏名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		-		-				
	친권자 親権者		①부 ②모 ③부모	효력발생일 効力発生日	년 월 일 年 月 日	①부 ②모 ③ 부모	효력발생일 効力発生日	년 월 일 年 月 日			
			①父 ②母 ③父母	원인 原因	① 협의 ② 재판 ① 協議 ② 裁判	①父 ②母 ③ 父母	원인 原因	① 협의 ② 재판 ① 協議 ② 裁判			
	미성년인 자의 성명 未成年の子の氏名										
주민등록번호		-		-		-					

住民登録番号		-			-		
친권자 親権者	①부 ②모	효력발생일	년 월 일	①부②모③	효력발생일	년 월 일	
	③부모	効力発生日	年 月 日	부모	効力発生日	年 月 日	
	①父 ②母 ③父母	원인	① 협의 ② 재판 ① 協議 ② 裁判	①父②母③ 父母	원인	① 협의 ② 재판 ① 協議 ② 裁判	
⑥신고인 출석여부 ⑥届出人出席有無		① 남편(부) ② 아내(처) ①夫 ②妻					
⑦제출인 ⑦提出人	성명 氏名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사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다른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눈표(*)로 표시한 자료**는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 ※ 他人の署名又は印章を盗用して虚偽の届出書を提出したり、虚偽の届出を行い、「家族関係登録簿に事実と異なる内容が記載されるようになった場合は、**刑法に基づき処罰**されることがあります。アステリスク(*)がつけられた資料は国家統計作成のために統計庁でも収集している資料です。
-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통계법」 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하여 성실응답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下記の事項は「統計法」第24条の2に基づき統計庁で実施する人口動向調査です。「統計法」第32条及び第33条によって誠実に答える義務があり、個人の秘密は固く守られますので、事実通りに記入してください。
- ※ 첨부서류 및 이혼당사자의 국적은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 ※ 添付書類及び離婚当事者の国籍は国家統計作成のために統計庁でも収集している資料です。

인구동향조사 人口動向調査

⑦실제 결혼 생활 시작일 ㉠實際の結婚生活開始日		년 월 일부터 年 月 日から	⑥19세 미만 자녀 수 ㉡19歳未満の子の数		명 人
④실제 이혼 연월일 ㉢實際の離婚年月日		년 월 일부터 年 月 日から			
㉣최종 졸업학교 ㉤最終 學歷	남편 (부) 夫	①학력 없음 ①學歷なし ④고등학교 ④高等学校 ②초등학교 ②小学校 ⑤대학교 ⑤大学(校) ③중학교 ③中学校 ⑥대학원 이상 ⑥大学院以上	아내 (처) 妻	①학력 없음 ①學歷なし ④고등학교 ④高等学校 ②초등학교 ②小学校 ③중학교 ③中学校 ⑥대학원 이상 ⑥大学院以上	
㉦직업 ㉧職業	남편 (부) 夫	①관리직 ①管理職 ③사무직 ③事務職 ⑤판매직 ⑤販売職 ⑦기능직 ⑦技能職 ⑦技能職 ⑨단순노무직 ⑨單純勞務職 ⑪학생·가사·무직 ⑪學生・家事・無職 ②전문직 ②専門職 ④서비스직 ④サービス職 ⑥농림어업 ⑥農林漁業 ⑧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⑧装置・機械操作及び 組立 ⑩군인 ⑩軍人	아내 (처) 妻	①관리직 ①管理職 ③사무직 ③事務職 ⑤판매직 ⑤販売職 ⑦기능직 ⑦技能職 ⑦技能職 ⑨단순노무직 ⑨單純勞務職 ⑪학생·가사·무직 ⑪學生・家事・無職 ②전문직 ②専門職 ④서비스직 ④サービス職 ⑥농림어업 ⑥農林漁業 ⑧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⑧装置・機械操作及び 組立 ⑩군인 ⑩軍人	

작성방법 作成方法

- ※등록기준지: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 ※登録基準地: 各欄の該当者が外国人の場合はその国籍を記載します。
- ※주민등록번호: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 ※住民登録番号: 各欄の該当者が外国人の場合は外国人登録番号(国内居所申告番号又は生年月日)を記載します。

- ①란: 협의이혼신고의 경우 반드시 당사자 쌍방이 서명(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하나, 재판상 이혼신고의 경우에는 일방이 서명(또는 기명날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①欄: 協議離婚届出の場合、必ず当事者双方が署名(又は記名捺印)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裁判上離婚届出の場合には、一方が署名(又は記名捺印)して離婚届を出すことができます。
- ②란: 이혼당사자의 부모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본적)를 기재합니다. 이혼당사자가 양자인 경우 양부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며, 이혼당사자의 부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또는 출생연월일) 및 국적을 기재합니다.
- ②欄: 離婚当事者の父母に住民登録番号がない場合には、登録基準地(本籍)を記載します。離婚当事者が養子の場合には、養父母の人的事項を記載し、離婚当事者の父母が外国人の場合には、住民登録番号の欄に外国人登録番号(又は生年月日)及び国籍を記載します。
- ③란: 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③欄: 下記の事項及び家族関係登録簿の記録を明確にするために特に必要な事項を記載します。
 - 신고사건으로 인하여 신분의 변경이 있게 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 사람의 성명,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및 신분변경의 사유
 - 届出事件により身分に変更が生じる人がいれば、その人の氏名、生年月日、登録基準地及び身分変更の事由
 - 피성년후견인(2018. 6. 30.까지는 금치산자 포함)이 협의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동의자의 성명, 서명(또는 날인) 및 출생연월일
 - 被成年後見人(2018.6.30.までは禁治産者含む)が協議上離婚をする場合は同意者の氏名、署名(又は捺印)及び生年月日
- ④란: 이혼관결(화해, 조정)의 경우에만 기재하고,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④欄: 離婚判決(和解、調停)の場合のみ記載し、協議離婚の場合は記載しません。
 - : 조정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성립이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이혼신고의 경우에는 “재판확정일자”아래의 ()안에 “조정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확정” 또는 “화해성립”, “화해권고결정”이라고 기재하고, “연월일”란에 그 성립(확정)일을 기재합니다.
 - : 調停成立、調停に代わる決定、和解成立又は和解勧告決定による離婚届出の場合は、「裁判確定日付」の下の()欄に「調停成立」、「調停に代わる決定の確定」又は「和解成立」、「和解勧告決定」と記載し、「年月日」欄にその成立(確定)日を記載します。
- ⑤란: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에는 기재하지 아니하며, 법원의 이혼의사확인 후에 정하여진 친권자를 기재합니다.
- ⑤欄: 協議離婚意思確認申立をするときには記載せず、法院の離婚意思確認後に定められた親権者を記載します。
 - 지정효력발생일은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이혼의 경우에는 재판 확정일을 기재합니다.
 - 指定効力発生日は協議離婚の場合は離婚届出日、裁判上離婚の場合は裁判確定日を記載します。
 - 원인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지정한 때에는 “**[1]**협의”에,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법원이 결정한 때에는 “**[2]**재판”에 ‘영표(○)’로 표시하고,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原因は当事者の協議により指定した場合は「**[1]**協議」に、職権又は申立により法院が決定した場合は「**[2]**裁判」に「○」印をつけ、その内容を証明する書面を添付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 자녀가 5명 이상인 경우 별지 기재 후 간인하여 첨부합니다. 임신 중인 자의 경우에는 출생신고 시 친권자 지정 신고를 합니다.
 - 子が5人以上いる場合は、別紙に記載し、割印して添付します。妊娠中の子の場合は出生届を出すときに親権者指定届出をします。
- ⑥란: 출석한 신고인의 해당번호에 ‘영표(○)’로 표시합니다.
- ⑥欄: 出席した届出人の該当番号に「○」印をつけます。
- ⑦란: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 ⑦欄: 提出人(届出人が作成した届出書を届出人でない人が提出する場合のみ記載)の氏名及び住民登録番号を記載します。[受付担当公務員は身分証で本人確認]
-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 ※ 下記の事項は「統計法」第24条の2に基づき統計庁で実施する人口動向調査です。
- ㉔란, ㉔란: 가족관계등록부상 신고일이나 재판확정일과는 관계없이 실제로 결혼(동거)생활을 시작한 날과 사실상 이혼(별거)생활을 시작한 날을 기재합니다.
- ㉔欄, ㉔欄: 家族関係登録簿上の届出日又は裁判確定日に関係なく、実際に結婚(同居)生活を始めた日と事実上離婚(別居)生活を始めた日を記載します。
- ㉕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교육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재학 또는 중퇴자는 최종 졸업한 학교의 해당번호에 ‘영표(○)’로 표시 합니다. <예시> 대학교 3학년 재학(중퇴) → ㉔고등학교에 ‘영표(○)’로 표시
- ㉕欄: 教育部長官が認めるすべての正規教育機関を基準にして記載し、各学校の在学者又は中退者は最終卒業した学校の該当番号に「○」印をつけます。<例示>大学3年生在学(中退)→ ㉔高等学校に「○」印をつける。
- ㉖란: 이혼할 당시의 주된 직업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 ㉖欄: 離婚当時の主な職業を基準に記載します。

[1] 관리자: 정부, 기업, 단체 또는 그 내부 부서의 정책과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 (공공 및 기업고위직 등)
 [1] 管理者: 政府、企業、団体又はその内部部署の政策と活動を企画、指揮及び調整 (公共及び企業の管理職など)

-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전문지식을 활용한 기술적 업무 (과학, 의료, 복지, 교육, 종교, 법률, 금융, 예술, 스포츠 등)
- ② 専門家及び関連従事者:専門知識を活用した技術的業務(科学、医療、福祉、教育、宗教、法律、金融、芸術、スポーツなど)
- ③ 사무종사자: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를 보조하여 업무추진(행정, 경영, 보험, 감사, 상담·안내·통계 등)
- ③ 事務従事者:管理者、専門家及び関連従事者を補助する業務(行政、経営、保険、監査、相談・案内・統計など)
- ④ 서비스종사자: 공공안전, 신변보호, 돌봄, 의료보조, 미용, 혼례 및 장례, 운송, 여가, 조리와 관련된 업무
- ④ サービス従事者:公共安全、身辺保護、ケア、医療補助、美容、婚礼及び葬儀、運送、余暇、調理に係る業務
- ⑤ 판매종사자: 영업활동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판매 (인터넷, 상점, 공공장소 등), 상품의 광고·홍보, 계산·정산 등
- ⑤ 販売従事者:営業活動による商品又はサービスの販売(インターネット、店、公共場所など)、商品の広告・広報、計算・精算など
- ⑥ 농림·어업수련종사자: 작물의 재배·수확, 동물의 번식·사육, 산림의 경작·개발, 수생 동·식물 번식 및 양식 등
- ⑥ 農林・漁業熟練従事者:作物の栽培・収穫、動物の繁殖・飼育、森林の耕作・開発、水生動・植物の繁殖及び養殖など
-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광업, 제조업, 건설업에서 손과 수공구를 사용하여 기계 설치 및 정비, 제품가공
- ⑦ 技能員及び関連技能従事者:鉱業、製造業、建設業で手と手工具を使用して行う機械の設置及び整備、製品加工
-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기계를 조작하여 제품생산·조립, 산업용기계·장비조작, 운송장비의 운전 등
- ⑧ 装置・機械操作及び組立従事者:機械操作による製品の生産・組立、産業用機械・装備の操作、運送装備の運転など
- ⑨ 단순노무 종사자: 주로 간단한 수공구의 사용과 단순하고 일상적이며 육체적 노력이 요구되는 업무
- ⑨ 単純労務従事者:主に簡単な手工具の使用と単純かつ日常的・肉体的労力を要する業務
- ⑩ 군인: 의무복무를 포함하여, 현재 군인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국방분야에 고용된 민간인과 예비군은 제외)
- ⑩ 軍人:義務服務を含め、現在軍人の身分を維持している場合(国防分野に雇用されている民間人と予備軍は除く)
- ⑪ 학생·가사·무직: 교육기관에 재학하며 학습에만 전념하거나, 전업주부이거나, 특정한 직업이 없는 경우
- ⑪ 学生・家事・無職:教育機関に在学して学習だけに専念する場合、専業主婦の場合、特定の職業がない場合

**첨부서류
添付書類**

1. 협의이혼: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1부
1. 協議離婚:協議離婚意思確認書謄本1部
2. 재판이혼: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조정·화해 성립의 경우는 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
2. 裁判離婚:判決謄本及び確定証明書各1部(調停・和解が成立している場合は調書謄本及び送達証明書)
3.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재판상 이혼
3. 外国裁判所の離婚判決による裁判上離婚
 - 이혼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확정증명서 각 1부.
 - 離婚判決の正本又は謄本と判決確定証明書各1部
 - 패소한 피고가 우리나라 국민인 경우에 그 피고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의 개시에 필요한 소환 또는 명령의 송달을 받았거나 또는 이를 받지 아니하고도 응소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1부(판결에 의하여 이점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한한다).
 - 敗訴した被告が韓国の国民である場合、その被告が公示送達によらず訴訟の開始に必要な召喚又は命令の送達を受けた事実又はこれを受けずに応訴した事実を証明する書面1部(判決によりこの点が明確でない場合に限り)
 - 위 각 서류의 번역문 1부.
 - 上記各書類の翻訳文1部
- ※ 아래 4항은 가족관계등록관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 ※ 下記の第4項は、家族関係登録官署にて電算でその内容が確認できる場合は添付を省略します。
4. 이혼 당사자 각각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4. 離婚当事者それぞれの家族関係登録簿の家族関係証明書、婚姻関係証明書各1通
5.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5. 事件本人が外国人の場合
 - 한국 방식에 의한 이혼: 사건본인 쌍방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사본 첨부
 - 韓国方式による離婚:事件本人双方が外国人である場合は、国籍を証明する書面(パスポート又は外国人登録証)の写し添付
 - 외국 방식에 의한 이혼: 이혼증서 등본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각 1부
 - 外国方式による離婚:離婚証書謄本及び国籍を証明する書面(パスポート又は外国人登録証)の写し各1部
6. 친권자지정과 관련한 소명자료
6. 親権者指定に係る疎明資料
 - 협의에 의한 경우 친권자지정 협의서등본 1부.
 - 協議による場合、親権者指定協議書謄本1部
 - 법원이 결정한 경우 심판서 정본 및 확정 증명서 1부.
 - 法院が決定した場合、審判書正本及び確定証明書1部
7.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7. 身分確認[家族関係登録例規第443号による]
 - ① 재판상 이혼신고(증서등본에 의한 이혼신고 포함)

① 裁判上離婚届出(証書謄本による離婚届出を含む)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届出人が出席した場合:身分証明書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提出人が出席した場合:提出人の身分証明書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郵便提出の場合:届出人の身分証明書の写し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7항의 ①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届出人が成年後見人の場合は、第7項の①書類以外に成年後見人の資格を証明する書面も一緒に添付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② 협의이혼신고

② 協議離婚届出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 일방의 신분증명서
- 届出人が出席した場合:届出人の一方の身分証明書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일방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 届出人欠席、提出人出席の場合:提出人の身分証明書及び届出人の一方の身分証明書又は署名公証又は印鑑証明書(届出人が本人の身分証明書なしで離婚届に署名した場合は署名公証、離婚届に印鑑を捺印した場合は印鑑証明書)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 일방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 郵便提出の場合:届出人の一方の署名公証又は印鑑証明書(離婚届に署名した場合は署名公証、離婚届に印鑑を捺印した場合は印鑑証明書)